

재 심 청 구 취 하

사 건 2000 재고합 000호 00

재심청구인 ○ ○

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를 취하합니다.

2000. 0. 0.

위 청구인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○○지원 귀중
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	www.klac.or
취하권자	※ 아래(1)참조	관 할	원심선고 법원
제출부수	취하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429조
재심취하 효 과	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함(형사소송법 429조2항)		

※ (1) 취하권자(형사소송법 424조)

- 1. 검사
- 2.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
- 3.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
- 4.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